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운영 내규

[의료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내규 제0001호, 043-830-8858]

제　　정 2020. 10. 06.
일부 개정 2020. 10. 23.
2020. 11. 18.
2021. 01. 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학칙」제31조(교육과정)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 내규에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제3조(인증 프로그램의 소속 학생에 대한 정의)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 신입학하는 학생 및 인증 프로그램으로 전입한 학생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의 재학생이 된다.

제4조(인증 프로그램으로 전입) ① 본 학과로 편입이나 전과하는 전입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인증 프로그램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편입생은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별표1]와 직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배정받은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전입생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체교과목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학생에게 대체교과목 인정 결과 및 인증 프로그램 이수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③ 인증 프로그램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전과생은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를 배정받은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전과생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생에게 인증 프로그램 이수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제5조(인증 프로그램의 포기) ① 인증 프로그램 소속 학생이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필수이수과목을 미신청할 경우 인증과정의 이수포기로 간주한다.

② 인증 프로그램의 이수를 포기할 경우 4학년 2학기 수강신청 전 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신청서[별표2]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신청서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인증 프로그램 대상학생 관리기록에 남긴다.

제6조(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요건 심사) ① 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요건 충족여부 심사는 인증 프로그램 학습성과별 교과기반 평가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심사결과는 합격/재심/불합격으로 판정되고, 최종 불합격으로 판정된 학생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재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7조(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의 졸업) ①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의 졸업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의 평가인증기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학교에서 따로 정한 본 학과 졸업학점 취득기준을 통과하여야한다.
2.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3]의 필수이수 교과목 40학점 이상 및 [별표4]의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인증 프로그램 이수 후 평가관리위원회의 인증 프로그램 성취도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인증 프로그램 성취도 인증심사는 교과기반평가 핵심교과목에 대한 교과기반평가, 프로그램종합시험 및 기타 역량평가(비교과활동, 현장실습 등 포함)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 11. 18.>

②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1항의 인증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갖춘 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임을 알 수 있도록 학위증 전공 란에 ‘보건 학사’ 외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 이수’를 추가 명기하여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제8조(인증 프로그램 책임자) ① 자격: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가진 전임교원이 한다. 단, 본 항에서의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는 강의(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전담 전임교원은 제외한 전임교원을 의미한다. <개정 2020. 11. 18.>

②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
2.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는 인증과 관련된 평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③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과정 편성, 운영 등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개정 2021. 01. 08>
2. 인증 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지속적 검토, 기획, 개발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개정 2021. 01. 08>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학과에 배정된 예산 집행에 참여한다. <개정 2021. 01. 08>
4.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한 업무를 회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한다 <개정 2021. 01. 08>
5. 기타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개정 2021. 01. 08>

④ 프로그램 책임자는 학과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하며, 임기는 별도 임명이 없는 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목적)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과 전반적인 학과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10.23.>
② 위원장은 학과장이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0.23.>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과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18.>
3. 학생 학습 및 진로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과 교육시설 및 설비, 기자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연 2회)
5. 기타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교육과정위원회

제12조(목적)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 및 산업체 전문가 등 외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18.>
② 위원장은 학과장이 하며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10.23.>
③ 외부위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전문가와 산업체 현장전문가, 졸업생 대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0.23.>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사회적 필요와 요구도 반영, 프로그램 최종성과 설정, 성취 분석 및 질관리, 효과적 교육방식 적용, 선・후수체계 등)
2.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목표의 설정과 관리(사회적 필요와 요구도 반영) <개정 2020. 11. 18.>
4. 교과목 이수체계 및 학습성과 평가체계 개발 및 개선, 최종성과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및 개선
6.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과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 최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

육과정을 매년 검토, 개선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학과 구성원이 공유한다.
③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 최종달성을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협의할 수 있다.
④ 강의평가 등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과목 강의평가 자료 등을 분석, 학과교수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⑤ 개선된 교육과정은 학과 홈페이지 및 대학교 교과과정 편람에 상시 공지한다.

제16조(교수법 개선) ① 교수법을 개선하기 위한 교내・외 교수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한다.
② 교수법 개선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 교육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 보수교육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주관 교육 <개정 2020.10.23.>
3.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관련 교육
4. 대교협 교수법, 온라인 교수법 등 기타 교수학습 프로그램

제5장 평가관리위원회

제17조(목적)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한다.

제18조(구성 및 역할) ① 평가관리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관리위원회의 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로 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평가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목표 달성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2.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3.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자체평가
4. 프로그램의 교과목 성취도 평가를 위한 질개선의견서(CQI) <개정 2020. 11. 18.>
5. 기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0.23.>
⑦ 같은 조 제5항 2호.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시기 등 상세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 11. 18.>
1. 프로그램 최종성과의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2. 학습성과 성취도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기별 운영된 필수 및 선택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평가, 현장실습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3. 학습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검토, 분석하여 위원회를 통해 학습성과 평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⑧ 같은 조 제5항 4조 관련 프로그램 교과목 성취도평가를 위한 주기적 질 개선활동에 대한 사항은 교과목별 담당교수가 매 학기말(7월, 1월)에 학교 통합정보시스템 내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업개선과 프로그램 최종성과 관리에 반영하고 교육과정 개선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신설 2020. 11. 18.>

제6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신설 2020. 10. 23.>

제19조(목적)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사항 전반을 심의한다.

제20조(구성) ①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장은 현장실습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자로 한다.
③ 위원은 전임교원 전원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를 둔다.
④ 현장실습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자는 전임교원으로 정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⑦ 현장실습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실습 준비교육의 기획 및 교육 시기, 교육내용, 방법, 대상이 포함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들이 만족도 또는 요구사항
3. 현장실습기관 의견수렴 결과
4. 기타 현장실습운영 및 현장실습교육 전반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학 과		신 청 자 성 명	
학 번		학 년	
편입/전과 구분			

위와 같이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승인일		프로그램책임자 서명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보관용

별표 2. 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신청서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신청서

학 과		성 명	
학 번		학 년	
교육과정 적용년도 (입학년도)	학년도	포기학년도/학기	학년 학기
포기 사유 (자세히 기술)			
지도교수 상담결과			
지도교수 상담일		지도교수 서명	

신청일		신청자 서명	
승인일		프로그램책임자 서명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보관용

별표 3.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필수이수 교과목 목록

교과목		실습과목여부	개설학기	학점	비고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2-2	3	
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실습	4-1	3	
3. 보건의료조직관리			2-1	3	
4. 건강정보보호			4-1	3	
5. 질병및의료행위분류		실습	3-1	2	
6.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실습	4-1	3	
7.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실습	4-2	2	
8. 암등록		실습	3-2	3	
9. 의료의 질관리			2-1	2	
10. 건강보험이론및실무		실습	2-2	3	
11. 보건의료통계		실습	2-1	3	
12.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실습	2-2	3	
13. 의료정보기술			1-2	3	
14. 의료관계법규			3-2	3	
15. 의학용어			2-1	3	
16. 병리학			1-1	3	
17. 해부생리학			1-2	3	
18. 현장실습	18-1. 현장실습	실습	4-2	3	2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
	18-2. 보건및병원행정실습	실습	4-2	3	
총 계	총 19과목(실습 10과목 포함) / 총 54점(실습 28학점 포함)				

별표 4.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선택이수 교과목 목록

교과목	실습과목여부	개설학기	학점	특성화 학습 영역
1. 의학용어(2)	-	2-2	3	보건의료정보관리
2. 의료정보관리학	-	2-2	3	보건의료정보관리
3. 의무기록전사	-	3-1	2	보건의료정보관리
4. 질병분류실습	-	3-2	2	보건의료정보관리
총 계		-	10	-